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9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64호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군산시 공무원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시민에게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9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65호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남녀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하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피해자”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구성원(의회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이 입은 2차 피해를 포함하며, 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장 및 의원

나. 의회 소속 구성원

다. 그 밖에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의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적용한다.

1.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심의·판단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3.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및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4.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구성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이 접수되어 조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긴급 보호, 상담, 2차 피해 방

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 지원 등) ① 의장은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2.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한도,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희롱 등 상담 또는 치유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지원 등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관 업무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의회 사무국 국·과장

3. 성희롱 등 피해자 치유 및 회복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노무사 등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사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및 관계자의 신원 및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신청인 구분	☐ 피해자 본인 ☐ 2차 피해자(☐ 신고자 ☐ 조력자) ☐ 피해자 대리인 등(피해자와 관계:)					
피해내용 (2차피해포함)						
지원신청항목 (중복선택가능)	☐ 심리·상담비용 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기타 지원					
[첨부서류] ☐ 처분통지서(판결문 등) ☐ 진단서/소견서 ☐ 상담 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9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466호

군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군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

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 대표의원 인영부

성명		직인	사인
한글			
한문			

※ 직인명 예시 :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군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군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군산시의회 의장 귀하

군산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9월 9일

군산시 훈령 제475호

군산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본 규정의 내용은 보안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